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 27713호, 2017.1.1.공포·시행)으로 청소·환경 등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 수행을 위한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구 미래비전, 지역협치, 도시재생 등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장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국 신설
 - 생활환경국 신설(안 제3조)
 - 생활환경국 조직 및 분장사무 신설(안 제8조)
- 국 신설에 따른 조직 및 국별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
 - 가로경관과(※건설관리과 명칭변경) : 안전건설국 → 생활환경국

- 청소과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환경과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푸른도시과 : 도시국 → 생활환경국
-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안 제4조, 안 제9조)
 - 기획담당관 신설
 - 도시재생과 신설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과 명칭 변경(안 제6조, 안 제8조)
 - 기획예산과 → 재정관리과
 - 건설관리과 → 가로경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 수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에 대한 전년대비 행정수요 변화율 및 기구의 수 등을 산정한 결과, 1개국이 증설 통보됨으로서, 현행 5개국에서 6개국으로 하여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조정되는 부서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분담사무를 정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현황표 참조)을 살펴보면,
 - ※ 주요내용 현황표

국 신 설	▶ 생활환경국		(안 제3조)
생활환경국 신설에 따른 구성안	부서명	변경전 국	(안 제8조 신설)
	가로경관과	안전건설국	
	청소과	복지국	
	환경과	복지국	
	푸른도시과	도시국	
부서 신설	▶ 기획담당관 ▶ 도시재생과		(안 제4조) (안 제9조)
부서 명칭변경	▶ 기획예산과 ⇨ 재정관리과 ▶ 건설관리과 ⇨ 가로경관과		(안 제6조) (안 제8조)

- 안 제3조에 생활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안 제8조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등 4개 소관부서로 재편하여 현장 중심조직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안 제4조에 부구청장 밑에 기획담당관을 신설하여, 구정의 핵심과제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 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를 재정관리과로, 안 제10조 안전건설국의 건설관리과를 가로경관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제8조 생활환경국으로 재편하고,
- 안 제7조 복지국에 청소과와 환경과를 생활환경국으로 재편하였으며,
- 안 제9조 도시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구정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며, 기존, 도시계획과의 일부 업무를 분리하여 도시재생과로 흡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 접점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조직 신설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적정 분담을 통하여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3 호
----------	---------

제출연월일 : 201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 접점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구정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국 신설 및 조직 조정 (안 제3조, 안 제8조)
- 나. 국별 분장사무 조정 및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 (안 제6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지방자치법」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4.20. ~ 5.1. / 11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국 및 안전건설국을”을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로 한다.

제4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재정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를 “주요 업무 평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과, 환경과, 다문화지원과”를 “다문화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0.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14.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15.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건축과, 푸른도시과”를 “도시재생과, 건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 도로과”를 “도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각 국(소)의 주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각 국(소)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u>도시국 및 안전건설국을</u> 둔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u>감사담당관</u>을 둔다.</p> <p>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u>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징수과, 부과과</u>를 둔다.</p> <p>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구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평가</u>에 관한 사항</p> <p>2. ~ 14. (생략)</p> <p>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u>청소과, 환경과, 다문화지원과</u>를 둔다.</p> <p>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략)</p> <p>8. <u>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9. <u>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u></p>	<p>제3조(국의 설치) ----- ----- -----, <u>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u>을 ----.</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u>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u>-----.</p> <p>제6조(재정국) ① ----- <u>재정관리과</u>,----- -----.</p> <p>② -----.</p> <p>1. <u>주요 업무 평가</u>----- -----</p> <p>2. ~ 14. (현행과 같음)</p> <p>제7조(복지국) ① ----- ----- -----, <u>다문화지원과</u>-----.</p> <p>② -----.</p> <p>1. ~ 7.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10.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
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
도시과를 둔다.

<신 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신 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

2.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신 설>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
에 관한 사항

<신 설>

4.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

5.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
에 관한 사항

<신 설>

6.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7.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 보전에 관한 사항

11.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2. ~ 15. (생략)

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0. 소음·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14. 공원의 개발 및 관리와 녹지 보전에 관한 사항

15.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국) ① -----, 도시재생과, 건축과, -----.

②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2. ~ 15.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건설국) ① -----, 도로과, ----- --.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가로순찰과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10.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11. ~ 19. (생략)

제3장 직속기관

〈신설〉

제10조 ~ 제12조(생략)

제4장 하부행정기관

〈신설〉

제13조 ~ 제15조(생략)

②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 ~ 제13조(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 ~ 제16조(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